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치발전기금 신설과 재원 마련〉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25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26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정치발전기금의 설치, 관리 · 운영, 용도 등 근거 마련	5
2. 정치발전기금 재원 마련: 기탁금 · 과태료 · 당선무효자 환수금 등	14

I. 제안경위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28.

다. 회 부 일 : 2025. 5. 29.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28.

다. 회 부 일 : 2025. 5.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해를 높이며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치발전기금의 재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입되는 기탁금 미반환액과 과태료 징수액, 국가 및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정치발전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연구 지원, 정당관계자 및 선거관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라. 정치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과태료·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해야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 등).

Ⅲ. 검토의견

1. 정치발전기금의 설치, 관리·운영, 용도 등 근거 마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해를 높이며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정치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라. (생략) <u><신설></u> <u>마.·바.</u> (생략) <u>사. 바목에</u>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 8.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제30조의2에 따른 정치발전기금에의 출연금</u> <u>바.·사.</u>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u>아. 사목</u> ----- ----- ----- 2. ~ 8. (현행과 같음) <u>제5장의2 정치발전기금</u>

<신 설>

제30조의2(정치발전기금의 설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해를 높이며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직선거법」 제57조·제261조·제265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2. 국가의 출연금

3.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 한도와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탁”은 “출연”으로, “기탁금”은 “출연금”으로 본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납입 방법·절차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정치발전기금의 관리·운

용) ① 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 설>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사무총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정치발전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연구 지원
2. 정당의 간부·당원·유급사무직원 등 정당관계자에 대한 교육·연수 지원
3.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교육·안내 지원
4.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5.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지원
6.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7.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8.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
요한 경비의 지출

제30조의5(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
심의회를 둔다.

②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 의 위원
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
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
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 의
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정치발전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
도에 따른다.

제30조의7(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제30조의4에 따라 지원된 기금은
지원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무총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	--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책 개발, 입법 활동, 지역구 활동 등 다양한 정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현행법상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함.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약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층 등 소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편향된 정치활동, 정책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국가의 관리 아래 기탁금 등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등의 독립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등을 위한 ‘정치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투명한 정치자금의 공급을 통해 정치활동의 자율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기능의 지속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은 현재 대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어, 별도 기금을 설치할 상대적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치발전기금 주요 사업에 대한 기존 일반회계 예산 지원 현황 》

(단위: 억 원)

주요사업	기존 일반회계 예산지원 현황		비고
	세부사업(내역사업)	'25예산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개발·연구 지원	정당사무지원	0.37	토론회·워크숍등
정당관계자에 대한 교육·연수 지원	정당사무지원	0.25	정당·후원회 회계자 사무지도등
정치자금 기부·기탁 촉진 홍보 지원	공명선거기반조성	0.5	정치후원금조성 활성화 등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개선 연구 지원	법제지원및법규운용	0.6	선거·정치관계법제 지원
	교육및연구기반조성	2.65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4.77	(미래)유권자 등 연수 및 강사양성·콘텐츠 개발
	공명선거기반조성	3.52	
소 계		12.6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고,¹⁾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²⁾

특히,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을 위한 사항을 기존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바, 정치발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 도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회계 내 편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출연금과 관련하여, 정당에 기(既)지원되고 있는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고려할 때,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행법상 정당은 인건비,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선거관계비용 등의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³⁾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개발비, 교육비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의 출연금을 두고 있는바, 유사 사업에 대해 보조금과 출연금이 모두 지원될 수 있어 국가 재원의 중복적인 사용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국가재정법」 제5조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 (생략)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별표2]에 「정치자금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624호)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임기만료 공직선거 실시 유무에 따라 귀속 기탁금 등의 편차가 존재하여 안정적 기금운용이 어려운 점, 재정 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정치발전기금 재원 마련: 기탁금·과태료·당선무효자 환수금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치발전기금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625호)과 연계하여 정치발전기금의 재원이 될 「공직선거법」에 따른 미반환 기탁금, 과태료, 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u> 1. 2. (생략)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u>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 ----- ----- ---- 「정치자금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치발전기금(이하 “정치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 ----- ----- ---- 제1항 후단에 따라 정치발전기금에 납입되는----- ----- -----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寄託金の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⑨ (생략)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

----- . 이 경우 전단에 따라 납부된 금액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발전기금에 납입한다.

③ -----

-----정치발전기금-----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탁금의 반환 및 납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

공

제 하고

-----정치 발전
기금-----.

⑪ 부과권자는 제10항 후단에 따라
기탁금에서 공제되거나 납부된 금
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⑫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_____
- _____

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생략)

⑫ (생략)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생략)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② (생략)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 제10항을 준용한다.

-----정 치 발 전 기 금-----

5. (현행과 같음)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 중 제57조에 따
른 기탁금 반환액은 정치발전기금
에 납입되며, 제122조의2에 따른 선
거비용보전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현행과 같음)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61조
제10항 및 제11항--.

헌행법 제57조·제261조·제265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은 각각 공직선거에 따른 기탁금 미반환분, 과태료,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금 반환분 및 대집행비용으로, 현재 해당 금액들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국가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또는 귀속되고 있음.

미반환 기탁금, 과태료, 당선무효 반환금 등을 재원으로 할 경우 해당 재원으로 인한 재원은 지난 5년 기준 총 253.9억원, 평균 50.78억원이 확보될 수 있으나,

대규모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023년은 각각 1.1억원에 불과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공직선거법 상 재원의 연도별 규모 현황 》

(단위: 억 원)

재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계 (평균)
미반환 기탁금	98.1	-	88.4	-	35	221.5
과태료	6.5	-	18.5	-	-	25
당선무효 반환	1.9	1.1	0.9	1.1	2.4	7.4
소계	106.5	1.1	107.8	1.1	37.4	253.9 (50.78)

주1: 대집행비용은 제외한 통계임.

주2: 2020년 및 2024년은 국회의원 선거, 2022년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가 있었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현행법 제57조·제261조·제265조의2 및 제271조에 따른 금액 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분(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발생하는 부분)까지 정치발전기금(국가)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금액들이 현재 공직선거의 관리·실시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⁴⁾하고 있는 비용들을 일부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문 의 처
02)6788-5332